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무원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16호

군산시 공무원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시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원직의 정수와 채용, 현원을 관리하는 인사부서를 말한다.
5. “소속부서”란 공무원직의 복무를 관장하는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 3.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노동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정원) 시장은 소속부서의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7조(전보) 시장은 업무상의 필요,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공무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직종의 분류) 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채용)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③ 공무원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원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11조(복무의무) 공무원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원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원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원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직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원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원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휴직 등) ① 시장은 공무원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보수) 공무원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와 공무원직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15조(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 한다.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7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9조(퇴직급여)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20조(표창)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교육훈련) 시장은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교육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산업안전)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원직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재해보상) 공무직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25조(손해배상) 시장은 공무직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17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분한다”를 “구분하며,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만”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복무선서) ①·② (생략)</p> <p>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p>	<p>제2조(복무선서)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휴가의 종류) ----- ----- 구분하며,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99 907 742 1276">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14</td></tr> <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5</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7</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20</td></tr> <tr><td>6년 이상</td><td>21</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p><삭 제></p>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p>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p> <p>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p>																	

-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③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 2.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5조의2(연가 당겨쓰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15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다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 일수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해야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5와 같이 한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
-----.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조문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9.03.15.>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X 해당연도 연가일수12(개월)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 ④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 ⑤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반일 연가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⑥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삭 제>

<삭 제>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
타 기관에 소환된 때
-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
시할 때
- 7.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
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참가할 때
-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
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
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
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 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의
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
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
어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제21조(특별휴가) <삭 제>

<삭 제>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삭 제>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삭 제>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생략)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 ⑨ (생략)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⑦ ~ ⑨ (현행과 같음)

<삭제>

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⑫ (생략)

<신설>

제24조 (생략)

<삭제>

⑫ (현행과 같음)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18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를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1급 관사 ” 를 “1급 · 2급 관사 ”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급 관사” 를 “1급 · 2급 관사”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1급 관사” 를 “1급 · 2급 관사”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② (생략)</p> <p>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u>변경 또는 용도폐지</u></p> <p>가. 동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u>또는 기준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u></p> <p>나. 읍·면 지역 :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u>또는 기준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28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생략)</p> <p>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u>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u>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28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고 단, 3급 관사의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p>	<p>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 -----</p>

2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금지 지역(연륙
되지 않은 도서지역, 이하 “도서지
역”이라 함)의 관사에 한한다.

1. · 2. (생략)

3. 보일러 운영비(다만, 1급 관사 · 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 관사에 한함)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
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다만,
1급 관사에 한함)

5. (생략)

6. 전화요금(다만, 1급 관사에 한함)

7. · 8.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 1급 · 2급 관
사-----

4. -----
----- 1급 ·
2급 관사---

5. (현행과 같음)

6. -----1급 · 2급 관사-----

7. · 8.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19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3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3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9조 중 “2020년 12월 31일” 을 “2023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1. 삭 제 2. 삭 제</p>	<p><삭 제></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1. ~ 3. (생 략)</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p> <p>-----</p> <p>-----</p> <p>----- 20</p> <p>23년 12월 31일-----</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p>	<p>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p> <p>①-----</p> <p>-----</p> <p>-----</p> <p>-----</p> <p>-----</p> <p>----- 2023년 12월</p> <p>31일-----</p> <p>-----</p> <p>-----</p> <p>-----</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20호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모
범음식점 육성자금”** 이란 **모범음식점**” 을 “**“육성자금”** 이란 **모범음식
점과 향토음식점**” 으로 한다.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향토음식점” 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시장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를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로 한다.

제4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행정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을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계장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재정법」” 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로, “책임중” 을 “책임 중” 으로, “기금운용관에게” 를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로 한다.

제7조 중 “자중” 을 “자 중”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여시” 를 “대여 시”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관리·운용” 을 “관리·운용 및 시설 개선 등 위생행정 업무” 로, “사항으로서” 를 “사항으로써” 로, “시장” 을 “위원장”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성하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위생 관련 분야 국장” 을 “업무담당국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담당과장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전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3. 그 밖에 심사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업무” 를 “회의” 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다.</p> <p>2. (생략)</p> <p>3. “향토음식점”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4. (생략)</p> <p>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p> <p>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향토음식점”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을 취급하고, 시장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5.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 -----.</p> <p>6.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p> <p>2. ~ 4. (생략)</p>	<p>제3조(기금의 조성) ----- -----.</p> <p>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 -----.</p>

1. ~ 5. (생략)

<신설>

6. ~ 8. (생략)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생략)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관광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행정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④「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생략)

제7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용자금 대여) ① (생략)

②시장은 용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계장을 -----.

④「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책임 중 -----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용자대상) ----- 자 중 -----.

제11조(용자금 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여시 -----.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문 신설 2009.12.29.>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식품위생 관련 분야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관련 분야 과장

2.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3. ----- 관리·운용 및 시설 개선 등 위생행정 업무----- 사항으로써 위원장-----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 업무담당국장-----

-----.

1. 업무담당과장

2.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p>② <u>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u></p> <p>③ <u>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생략)</p> <p>제16조(간사) ① <u>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u></p> <p>② <u>간사는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조문 신설 2009.12.29.></u></p>	<p><u>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② <u>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u></p> <p>③ <u>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u></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 ----- <u>회의</u>-----.</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21호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호” 를 “제9호, 제10호”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5의2제9호” 를 “별표 15의2제9호, 제10호”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그 밖에 군산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42조 별표 15의2 <u>제9호</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제9호, 제10호</u>----- ----- -----.</p>
<p>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u>별표 15의2제9호</u>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 ----- <u>별표 15의2제9호, 제10호</u>----- ----- ----- ----- -----.</p>
<p>1. 2. (생략)</p>	<p>1. 2. (현행과 같음)</p>
<p><신설></p>	<p>3. <u>그 밖에 군산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u></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22호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재활 전문치료센터, 자립지원 생활센터 돌봄, 상담 교육,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권리보장과 재활전문치료센터 및 자립지원 생활센터,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
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평생교육센터 설치·지정)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23호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6.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7.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

동으로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지원방법)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및 반장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등)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가정환경·급식지원형태·급식지원시기·소득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아동 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 담당국장, 아동복지 담당과장, 식품위생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의원(행정복지위원회 소속)
2. 관계 공무원 및 학부모 대표
3. 관할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급식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급식지킴이) ①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급식지킴이는 이·통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급식경비 집행과 지도·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아동급식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24호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을 선도하는 군산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확립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 이행, 그리고 군산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 금지는 물론,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지원 및 생산·유통·소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기술”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말한다.
 -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3.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이란 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 4. “생산자”란 군산시에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 5.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2. 대체작물 생산 및 유통·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지원 시책
- 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재배의 금지)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시험, 일반)를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의도적·비의도적 재배에 대한 예찰 등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의심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 촉진) 시장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대체작물 생산 및 소비 촉진 관련 사업 등
-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을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유통·소비 안전관리) ①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 유통·소비 안전관리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3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25호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산시의회,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과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26호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을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위임된” 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을 “법 제 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2조 제16호” 를 “법 제2조제16호” 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8호” 를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 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를 “호의” 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 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로” 를 “자동차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u>대기환경보전법</u>」 제58조에 따라 위임된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u>천연가스자동차</u>”란 법 제2조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p> <p>4. “<u>배출가스저감장치</u>”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u>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u>」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p> <p>5. 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4. ----- ----- ----- <u>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u> ----- ----- -.</p> <p>5. 6. (현행과 같음)</p>
<p>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u>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군산시 관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u></p>	<p>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u>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u>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u>’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u> ----- ----- ----- -----.</p>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
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생략)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생략)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8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
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생략)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
법」,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군
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
을 준용한다.

-----.

1. ----- 법 제2조제16호-----

2. (현행과 같음)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
6호-----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적 지원) ① ----- 호의

----- 지원-----.

1. (현행과 같음)

2. ----- 자동차를 -----

3.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법, 「운행차 배
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
침」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27호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지킴이의 구성) 군산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군산시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군산시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수질·비산먼지·소음·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전용 및 임산물 굴취·채취 등 산림피해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양환경 오염행위(오염물질 배출, 해안가 폐기물 방치 등) 감시 및 신고
4.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어업자에 대한 감시 및 신고
5. 하천 내 불법경작, 무단적치행위 등 감시 및 신고

6.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개별 사업장을 출입·감시하는 행위
-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제4조(환경지킴이 위촉) ① 시장은 군산시에 5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 1.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
- 4.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② 환경지킴이는 무보수 및 명예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 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를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 환경지킴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 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6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 시장은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한다.

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등) 시장은 환경지킴이의 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매년 환경지킴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환경지킴이에게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28호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시장은 국공유지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지 보도도 파손시 보수나 교체를 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은 자재 또는 자재비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문	개정문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 ⑥ (생략) <신설>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시장은 국공유지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지 보도도 파손시 보수나 교체를 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은 자재 또는 자재비 일부를 부담 시킬수 있다.</u>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29호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군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산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관련 사항
-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 사항
-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 사항
-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30호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녀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치는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23-10번지 외 3필지에 둔다
- 2. 판매장 규모는 지상1층 1동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388.8m²이다.

제3조(주요기능) 판매장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산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축·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판매 시설
- 2. 군산시 우수 농수산물 등 판매·홍보 및 정보 제공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판매장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마을에 소재를 둔 농수산물관련법인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는 군산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운
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 항목 등은 시장이 직접 정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자기 책임하에 판매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
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 운영시 판매장의 내부 집기와 추가시설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 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탁운영자는 판매장 내 점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무녀도
주민 또는 단체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전대자를 주민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
집 공고일 현재 무녀도에 10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하며, 단체는 마을주민
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전대 계획에 대하여 시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수탁 운영 계약) ①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단체는 선정된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단체가 제1항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판매장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하 “허가 기간”이라 한다)은 그 허가
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 허가 기간 중 개발계획 등으로 인하
여 불가피하게 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허가 기간은 가설건축물 철거 전
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운영자가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종합적인 관리능력 등을 평
가 후 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사용료) ① 판매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② 판매장의 사용료 납기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판매대상 품목 관리) ① 판매장에서는 군산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산물 위주로 판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 창출과 관광객 수요 등을 감안하여 타 지역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운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정상적인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운영자는 위탁계약 만료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단체가 사전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의 임의변경
2. 재산 또는 위탁건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임차한 면적 이외의 장소에 물건 적재 및 시설 설치 행위

4. 타 지역 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

5. 제9조에 의한 지도·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산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제11조(변상 등) ① 수탁운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수탁운영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보험가입 등) ① 수탁운영자는 전대자에게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공제) 및 화재보험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대하여 전대자가 판매장 입주 전, 보험증권 원본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전대자의 점포 운영기간 동안 손해 및 화재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기간 만료전 갱신된 최신 보험증권을 보관·관리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31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감면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신 설></p> <p>7. (생 략)</p> <p>② (생 략)</p>	<p>제34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조례 제1832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⑥ 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간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재난의 기간,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의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미비할 경우, 20일간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결정·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업종	오 수 량 (m ³ /월)	요 금 (원)				
		2018. 1.	2019. 1.	2020. 1.	2021. 1.	2022. 1.
가정용	1-20	335	420	525	655	820
	21-30	475	590	740	925	1,155
	31이상	625	780	975	1,220	1,525
산업용	1m ³ 당	450	560	700	875	1,095

업종	오 수 량 (m ³ /월)	요 금 (원)				
		2018. 1.	2019. 1.	2020. 1.	2021. 7.	2022. 7.
일반용	1-30	485	605	760	950	1,190
	31-50	690	865	1,080	1,350	1,690
	51-100	830	1,035	1,295	1,620	2,025
	101-500	1,115	1,395	1,745	2,185	2,730
	501이상	1,480	1,850	2,310	2,890	3,615
욕탕용	1m ³ 당	415	520	650	815	1,020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u>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u>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u>를 대상으로 부과 · 징수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신설></p> <p>② ~ ⑤ (생략)</p> <p><신설></p>	<p>제23조(감면 등) ①-----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간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재난의 기간,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p>
<p>제24조(이의신청) ① (생략)</p> <p><신설></p>	<p>제24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이의신청의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미비할 경우, 20일간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p>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결정·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규칙 제731호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을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규정함을목적**” 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퍼센트 내외의 낮은**” 을 “**낮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만**” 을 “**(다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업종별 용자한도액을 용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제4조 본문 중 “**식품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를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용자대상업소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로 한다.

4. 용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6조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 을 “육성자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연2퍼센트(용자금리 1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수수료 1퍼센트)” 를 “연리 1퍼센트(수수료)” 로, “제11조 규정에 의한” 을 “제11조에 따른” 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리 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를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 을 “어느 하나” 로, “상환기간전이라도” 를 “상환기간 전이라도”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⑤시설개선자금을 용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보고)” 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 로 한다.

제10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9조에 따라” 로, “별지 제6호서식” 을 “별지 제8호서식” 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을 “(포상금의 지급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등에 대한 시민 신고대상 및 보상금” 을 “제4조제7호에 따른 포상금” 으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의 ” 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 으로 한다.

제14조 중 “육성등” 을 “육성 등” 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위원회 해촉 등)” 을 “(위원 해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조례 제1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6조제2항제4호 중 “밖의” 를 “밖에” 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8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종별 업소당 용자한도액(제7조 관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HACCP 시설자금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화 장 실 시설개선자금
업 종 명						
식품제조·가공업		22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해당없음	20 이내
식품 점 객 업	휴게음식점	7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해당없음	20 이내
	일반음식점	7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해당없음	20 이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12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50 이내	20 이내
	일반음식점 중 향토음식점	12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50 이내	20 이내
	제과점 영업	7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20 이내
	단란주점	20 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이내
	유흥주점	20 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이내
위탁운영 집단급식소		7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20 이내

[별지 제2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	⑦ 영업장총면적	m ²	⑧ 자산총액	천원
대상업종	⑨ 업종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업 <input type="checkbox"/> 휴게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제과점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 <input type="checkbox"/> 모범음식점 <input type="checkbox"/> 향토전통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위탁급식영업 <input type="checkbox"/> 단란주점 <input type="checkbox"/> 유흥주점		
자금용자 신청내역	⑩ 실소요금액		⑪ 용자신청금액	

위와 같이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시군확인		20 년 월 일	지정은행확인	
확인자		신청인 (인)	은행명	
직	성명		대출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인)			확인자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용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별지 제3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④ 주소(소재지)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⑤ 영업장총면적	m ² (평)		
	⑥ 계 획 내 용			
자금용자 신청내역	⑦ 실소요금액	⑧ 용자신청금액	⑩ 비 고	

위와 같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용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제5조제1항제4호 관련)

용자이율 : 연리 1%(수수료)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지사항

○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설 개선자금을 용자받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조기상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용자금을 수령 후 용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용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 시·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 육성자금의 용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용자를 받았을 때
-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업소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용자대상업소 명단(제5조제2항 관련)

업 종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면적 (㎡)	시설개선 주요내용	실소요 금 액	신청 금액
합 계							
식품제조 가 공 업	소 계						
휴게 음식점	소 계						
일반 음식점	소 계						
모범 음식점	소 계						
향토전통 음 식 점	소 계						
단란주점	소 계						
유흥주점	소 계						

[별지 제6호서식]

시설개선 완료신고서(제7조제5항 관련)					
신고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	
				신 청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용자금액	원	신 청 일 (시·군청)	20 . . .	대 출 일 (수탁금융기관)	20 . . .
용자및상환조건	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 %)				
용자금의 용도	영업장시설개선(), 화장실시설개선(), 육성자금()				
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					
공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개·보수 내용	※ 개략 기재				
착 공 일	20 년 월 일				
완 공 일	20 년 월 일				
시공 업체명					
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개선 완료사진 :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사진 2. 용자금 지출 증빙서류 : 각 1부 - 세금계산서, 지출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u>군산시장</u>(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u>1퍼센트</u> 내외의 <u>낮은</u>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p> <p>③ <u>수탁금융기관은</u>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p> <p>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u>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u>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2. 군산시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u>다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u>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p><u>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 ----- <u>규정함을</u> 목적-----.</p> <p>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 ----- ----- <u>낮은</u>----- -----.</p> <p><삭 제></p> <p>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u> ----- ----- 2. ----- ----- -----(<u>다만,</u> ----- -----.

② 삭 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용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4조(용자대상 우선순위 등) 용자대상자의 용자신청금액이 용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용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용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용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용자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삭 제

<신 설>

4. ~ 6. (생 략)

②용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영업의 성실성 등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용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용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업종별 용자한도액을 용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조(용자대상 우선순위 등)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5조(용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1. · 2. (현행과 같음)

4. 용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 우선순위
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용자대상업소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용자대상 선정 통보) ①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대상업소의 용자신청금액이 용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용자대상업소별로 용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용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용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에 한한다.

제7조(용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용자한도액은 별표 1 과 같다.

②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트(용자금리 1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용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시장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제6조(용자대상 선정 통보) ①-----
-----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연도-----.

제7조(용자 및 상환조건) ①-----
육성자금-----
-----.

②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 연리 1퍼센트(수수료)-----

----- 제11조에 따른 -----
-----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

④----- 어느 하나----- 상환기간 전이라도 -----
-----.

1. ~ 6. (현행과 같음)

⑤시설개선자금을 용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

⑤ 기타 용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금대출) ①·② (생략)

③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용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용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용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조례 제4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등에대한 시민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용자개시)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등 용자사업은 충분한 기금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

제15조(위원회 해촉 등)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

설개선 완료신고서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⑥ 그 밖에 -----
-----.

제8조(자금대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른다.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
-----.

제10조(용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

----- 별지 제8호서식 -----
-----.

제11조(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4조제7호에 따른 포상금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

제14조(용자개시) ----- 육성 등 -----
-----.

제15조(위원 해촉 등) -----

----- 해당 -----.

축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
격을 상실하였을 때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조례 제13조의2제3항에도 불
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규칙 제732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다목 중 “그 밖에 재난재해 또는 기타”를 “기타”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7호(중전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4조제1항제7호”를 각각 “제34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한다.

- 5.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용 요금을 감면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재난의 기간,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감면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p> <p>가.·나. (생략)</p> <p>다. <u>그 밖에 재난재해 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6.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시장이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가.·나. (생략)</p> <p>② 제1항제5호의 감면적용은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확보하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조례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용요금을 감면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재난의 기간,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u></p> <p>6. --- <u>제34조제1항제8호</u>-----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기타</u> ----- -----.</p> <p>7. --- <u>제34조제1항제8호</u>-----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제6호</u>----- ----- -----.</p>

군산시 공고 제2021-365호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탐방지원센터 및 고군산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목적 · 정의 · 업무기능 등
- 나. 운영의 위탁(민간위탁운영 · 위탁해지등)
- 다. 시설의 사용신청 · 사용대상 및 사용료 등
- 라. 숙소 이용대상 · 사용료 · 운영규정 등

3. 의견제출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항만해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항만해양과(전화 : 063-454-4789, FAX : 063-454-278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항만해양과 고군산 탐방지원센터팀 (063-454-47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호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이하 “탐방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탐방지원센터 위치는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27(선유도리 213-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방지원센터 시설”이란 관리사무소, 회의실, 숙박공간 등을 포함한 탐방지원센터의 토지와 건물, 그에 부속된 각종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탐방지원센터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이하 “해수욕장 개장기간”이라 한다)이란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부서가 매년 개장기간으로 고시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탐방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군산관광 탐방 안내소 및 주민·관광객 휴게공간 제공 등
2. 주민 및 관광객 등에게 회의, 교육 공간 제공
3.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종합상황실 등 운영 지원
4.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직원 및 시의원 등 대상 휴양소 운영
5. 그 밖에 탐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탐방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탐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탐방지원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위탁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
- 2. 위탁기간
- 3. 수탁자의 의무
- 4.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 6. 그 밖에 탐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탐방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제7조(사용 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탐방지원센터에서 정한 양식에 준하여 사용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과 별도의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신청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청 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 3.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그 밖에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실 사용) ① 회의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목적의 교육 또는 회의 시
2. 시 소속 직원 또는 시의회 소속 의원의 교육 또는 회의 시
3. 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업무관련 사용 시
4. 지역공동체 모임·동아리활동·단체 탐방객 등 교육 또는 회의 시

② 회의실 사용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이용자는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사무실 사용) ①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전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탐방지원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숙소 이용대상) 숙소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임기직 및 시의회 소속 의원
2. 시가 주관하는 공적 행사 또는 업무에 참석하는 사람
3. 그 밖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를 방문한 사람

제13조(숙소 이용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의해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숙소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이용대상자가 사전 통보없이 숙소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숙소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숙소 퇴실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숙소 이용을 대여한 경우
2. 숙소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약된 이용대상자가 2회 이상 사전 통보 없이 숙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4.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경우
5. 그 밖에 숙소 이용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제15조(숙소 운영규정) 관리자는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숙소 사용료

층별	호수	전용면적		객실 구성						기준정원	사용료
				거실	방	화장실	1	2	3		
3층	301호	34.06㎡	10평	0	1	1	1	3명	30,000원		
	302호	38.59㎡	12평	1	1	1	1	4명	40,000원		
	303호	38.70㎡	12평	1	1	1	1	4명	40,000원		
	304호	58.08㎡	18평	1	2	1	1	5명	50,000원		
4층	401호	34.06㎡	10평	0	1	1	1	3명	30,000원		
	402호	38.59㎡	12평	1	1	1	1	4명	40,000원		
	403호	38.70㎡	12평	1	1	1	1	4명	40,000원		
	404호	58.08㎡	18평	1	2	1	1	5명	50,000원		

※ 유의사항

1. 조례 제12조의 숙소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는 1인 2실 2박이내, 개장기간 내는 1인 1실 2박 이내로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기준정원 대비 1인 초과시마다 호실 기본 사용료에 5,0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위를 위반하여 기준정원 초과 이용시는 강제 퇴실 또는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2]

숙소 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	환 급 기 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료의 50% 공제후 환급
	이용개시 이후	환급 불가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를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p>※ 이용자가 이용예정 시간까지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개시 이후 취소로 본다.</p> <p>※ 이용자가 승인받은 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이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p>		

군산시 고시 제2021-2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군 산 시 장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성 명 (법인명)	군산시장(건설과장)		
하천명칭	탑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점용목적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14-25 외 9필지 ○ 임피면 농마교 재가설공사 구간 교량 재가설		
점용면적	일시 점용 40,944㎡, 영구점용 567㎡		
최초허가일	2021년 2월 15일		
점용기간	일시점용 : 2021년 2월 15일 ~ 2021년 12월(공사준공일) 영구점용 : 2021년 12월(공사준공일) ~ 영구		

군산시 공고 2021-353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오룡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4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오룡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위치 : 군산시 오룡동 897-3번지 일원
-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적 : 9,692m²
 - 규모 : 토지 16필지
- 라. 사업기간 : 2020. 1. 1. ~ 2021. 12. 31.
-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 성명 : 군산시장(안전총괄과)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가. 오룡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권리일체(세부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1. 2. 24. ~ 2021. 3. 13.(17일간)

나. 열람장소 : 군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4)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협의를 예정

나.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함.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를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라.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마.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1) 추천요건 : 보상대상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2) 추천기한 :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3) 추천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바. 보상금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 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5. 기타사항

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오룡지구】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오룡동	896-7	대	366	366	차옥*	군산시 오룡길 34-1(오룡동)			
						양종*	군산시 오룡재길			
2	오룡동	896-8	대	13	13	박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진로 85-5(만촌동)			
3	오룡동	897-11	전	330	330	권영*	안동시 송현길 84-28, 106동 707호			
4	오룡동	897-13	전	251	251	이두*	경산시 삼풍로 13-7, 101동 1605호(삼풍동, 태왕드람하이츠)			
5	오룡동	897-1	전	331	331	이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30길 6-2(파동)			
						김순*	경산시 성암로5길 10-2			
6	오룡동	897-8	전	411	411	최정*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16, 113동 1403호(평리동, 평리롯데캐슬)			
7	오룡동	897-5	전	20	20	김영* 외 1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90			
8	오룡동	898-4	전	357	335	김영* 외 1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90	고양시		압류
						정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9-1 두산동아아파트 102동 106호			
9	오룡동	898-5	전	235	223	김영* 외 1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90	전북상호 신용금고	군산시 죽성동 44-2	가압류
						정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9-1 두산동아아파트 102동 106호			
10	오룡동	898-65	대	1	1	이진* 외 1인	군산시 오룡동 896-7			
11	오룡동	897-2	전	195	195	김영* 외 1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90	전북상호 신용금고	군산시 죽성동 44-2	가압류
12	오룡동	897-3	전	198	198	김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90	전북상호 신용금고	군산시 죽성동 44-2	가압류
						장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	전북상호 신용금고	군산시 죽성동 44-2	가압류
13	오룡동	897-4	전	305	305	정창*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320, 8동 605호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압류
14	오룡동	898-6	전	33	33	최원*	옥구군 옥산면 사장리 1			
15	오룡동	896-57	대	662	34	주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9-1 두산동아아파트 102동 106호			
16	오룡동	896-41	대	259	10	유정*	군산시 오룡동 896-41			

군산시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2월 24일

군산시 예규 제39호

군산시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군산시 본청 및 소속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규정과의 관계)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 수량,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합구매 하여야 한다.

-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 2. 여러 부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부서 간 통합 구매의 주관은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100만원 이상 구매 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 ·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용도) ① 상품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산시 포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 2.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3. 제도개선,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 4. 재난 · 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
- 5.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 6.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제한) ① 상품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한다.

- 1. 명절 등에 감독기관 · 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 상급기관 ·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8조(상품권 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 · 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목적 · 구매일자 · 구매처 · 예산과목 · 구매수량, 배부일자 · 지급수량 ·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수령한 사람이 자필 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 2.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 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10조(관리감독) ① 감사부서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정성
-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 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
- 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내역 공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종류, 용도, 수량, 구매액, 사용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연도 1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